

제26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
수석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5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2. 제안이유

-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법인인 (재)M&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: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
- 위탁기간: 5년
- 위탁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24조

나. 추진일정

- 2020. 3월: 공개모집 계획 수립
- 2020. 4~5월: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
- 2020. 6월: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(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: 운영비 연375,136천원(국,시,구비)

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사업을 수행하는 (재)M&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어린이집의 운영사무는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하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영유아보육법

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